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12월 15일) 상정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 김영국)

□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 및 부서기능에 적합한 사무조정을 위해 시장의 권한사무 중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(안 별표 1 및 별표 2)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 규정 변경(세정과)
-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위임사무 삭제(도로과)

나.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(안 별표 1)

-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(재난안전관리과 → 하수과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제정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세정과	1. 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	가. 납세의 고지 나. 부과취소 및 변경 다. 납기 전 징수 라. 천재 등에 따른 기한의 연장 마. 가산금 및 독촉 바. 체납처분 사. 결손처분 아. 교부청구 자. 관허사업의 제한 차. 징수유예	·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· 같은 법 제58조 · 같은 법 제7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· 같은 법 제26조, 제27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· 같은 법 제59조, 제61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· 같은 법 제91조부터 제98 조까지 · 같은 법 제9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· 같은 법 제101조 · 같은 법 제65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· 같은 법 제80조부터 제84 조까지	구청장
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세정과		카. 지방세 환급금 처리 타. 소멸시효 파. 소멸시효 하. 공시송달 거. 징수촉탁 너. 공탁 더.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 러.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며.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·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·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 · 같은 법 제33조 · 같은 법 제68조 · 같은 법 제72조 · 같은 법 제136조 · 같은 법 제63조 ·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	구청장

별표 1의 도로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10호 도로손해자 부담금의 징수란을 삭제하고, 재난안전관리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4호란부터 제11호란까지를 삭제하며, 하수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5호란부터 제12호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하수과	5. 소하천 점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나.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다. 소하천 점용에 따른 원상 회복 비용의 예치 라. 법령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의 처분 마.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바.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한 법령위반자의 조치	·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·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2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· 같은 법 제16조 · 같은 법 제17조· 제18조 및 제18조의2 · 같은 법 제22조 ·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	구청장

실과 소별	위 임 사 무 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적 용	수임 기관
하수과	6.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공유수면의 관리 나. 공작물의 신·개축 변경 허가 다. 접한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 허가 라. 준설 및 굴착 허가 마. 인수 및 주수 허가 바. 흙, 모래 또는 돌을 채취,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허가 사.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의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가 아. 부두,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 또는 사용허가 자. 나.~아. 이외의 점용허가 차.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허가 카. 같은 허가의 고시	·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 · 같은 법 제8조	구청장
	7. 제6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·징수 나.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감면 다. 원상회복 의무명령 및 면제승인	·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· 같은 법 제14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· 같은 법 제21조	

실과 소별	위 임 사 무 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적 용	수임 기관
하수과	8. 제6호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 한	가.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나. 권리의무의 상속·신고 처리 다.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의 처리 라. 성명, 주소변경 등 제 신고의 처리 마. 허가기간 연장 허가	·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· 같은 법 제1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· 같은 법 제1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· 같은 법 제16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8조	구청장
	9. 제6호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을 위반하였을 때의 다음의 조 치를 취하는 권 한	가. 허가의 취소 나. 효력의 정지처분, 원상회복, 손해방지 시설의 설치 다. 공작물 등의 개축허가 이전조 치	·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· 같은 법 제19조 · 같은 법 제19조	
	10. 공유수면의 장 애물 제거 명령		·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3조	
	11. 공유수면의 사 용 제한 또는 금 지		·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	
	12. 공유수면관리 를 위한 조사 및 질문		·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제1항	

별표 2의 세정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세정과	2.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	가. 지방세관련 제증명서의 발급	·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3조 ·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	구청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